

대전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11082 판결 [보증금청구]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1108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가합10273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 선고 2018. 7. 19.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가합10273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주채무자 C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면서도 C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을 오인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은 연대보증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는 2018. 5. 29.자 항소이유서의 송달로 원고의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 또는 피고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한편, 피고는 원고의 기망행위와 그에 따라 피고가 착오에 빠지게 된 태양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한다. 즉, 원고와 C이 기존 채무를 피고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고자 원고가 2016. 10. 28. C에 3억 원을 대여하되 그 중 일부 2억 원으로 그날 변제기에 달한 기존 채무 2억 원을 바로 변제처리하면서 새로운 대여금 3억 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것이다.

나. 판단

① 우선, 원고가 C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가 이 사건 채권양도로 주채무가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되었다거나 연대보증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해 온 점이나 제1심 증인 E의 증언 등에 비추어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나아가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C의 주채무가 이 사건 채권양도로 소멸할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 오인한 것이 아니라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C에게 추가로 3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중 2억 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로써 반환받았더라도, C의 차용 경위가 연대보증계약 체결 시 당사자 사이에 거론된 바 없어 연대보증계약 체결의 동기로서 표시되거나 내용으로 된 바 없는 점, 피고가 C의 차용금 3억 원을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로 연대보증을 한 이상 그 연대보증의 대상 채무가 기존 채무 변제금 마련을 위한 새 대여금 채무인지 다른 대여금 채무인지에 따라 그 의무의 내용이나 성격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기망이나 착오가 개재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연대보증이 그 중요 부분의 착오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문광섭

판사정승규

판사이인석

1) 소장 기재 2017. 2. 28.은 착오로 보이므로,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3. 1.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선택한다.